

##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   년   월   일
제출자 : 성 주 군 수

### 1. 개정이유

전시관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, 공정거래위원회 발굴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관람료 등의 개별 반환 사유와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명시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·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3항)
- 나. 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   타
  - 신·구조문대비표
  - 입법예고 : 2022. 10. 20. ~ 11. 9. (20일간)
  -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5206(2022. 10. 13.)호]
  -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43725(2022. 10. 13.)호]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관람료)”를 “(관람료 및 체험료 등)”으로 한다.

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전시관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·체험 프로그램(이하 “프로그램”)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프로그램 신청자로부터 프로그램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④ 관람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.

1. 이용자가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: 전액 반환
2. 전시관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관람 및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: 전액 반환
3. 각종 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 반환
4. 과오납의 경우 : 과오납분 반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관람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8조(관람료 및 체험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군수는 전시관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·체험 프로그램(이하 “프로그램”)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프로그램 신청자로부터 프로그램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④ 관람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용자가 관람 또는 체험을 시작하기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: 전액 반환</li> <li>2. 전시관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관람 및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: 전액 반환</li> <li>3. 각종 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관람 및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: 전액 반환</li> <li>4. 과오납의 경우 : 과오납분 반환</li> </ol>

## 성주군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# 가. 재정수반요인

해당없음

#### 나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#### 다. 미첨부 사유

「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#### 라. 작성자

문화예술과 고분군전시관담당 박효인